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7. 20 선고 2021가단34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9.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3. 23.부터 2020. 11. 22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)

판사 이정현

별지